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6호, 2026.4.30.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6호, 2026.9.4.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진료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광역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선발지역의 수”란 대학의 의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 수 및 광역권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xt{선발비율}(\%) = \frac{\text{당해연도 의과대학입학정원} - \text{2024학년도 의과대학입학정원}}{\text{당해연도 의과대학입학정원}} \times 100$$

제4조(지역별 선발 비율)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의 지정) 영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선발인원의 지역별 배분) ① 대학의 장이 제3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하 “선발인원”이라 한다)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
2.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이 항에서 “잔여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

나. 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1명 이상인 지역

3.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비

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지역의 순서대로 잔여인원을 1명씩 배분한다.

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배분 결과 진료권 중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진료권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
2.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진료권에 대하여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에 따라 진료권별로 1명씩 배분한다.
3.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광역권에 배분한다.

제6조(선발인원과 지역의 수가 동일한 경우의 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선발인원 수가 해당 대학의 선발지역의 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역별 선발 비

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역별 선발 비율(제4조 관련)

1.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료권별 선발 비율

의과대학 소재지	진료권(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선발 비율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22.1%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6.3%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17.4%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11.2%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13.0%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48.4%
	충청북도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14.8%
	충청북도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6.8%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19.0%
	전라남도 여수권(여주시)	5.6%
	전라남도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23.4%
	전라남도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8.7%
	전라남도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7.3%
	전라남도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6.0%
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4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권(군산시)	6.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권(익산시)	6.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9.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7.1%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6.1%
	경상북도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18.0%
	경상북도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6.7%
	경상북도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19.9%

	경상북도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5.0%
	경상북도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4.3%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24.6%
	경상남도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12.2%
	경상남도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8.6%
	경상남도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21.7%
	경상남도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9%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2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19.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5.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권(강릉시)	9.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8.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7.6%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4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권(서귀포시)	29.7%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19.5%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28.6%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17.2%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21.2%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10.5%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3.0%

2.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에 따른 광역권별 선발 비율

의과대학 소재지	광역권(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선발 비율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0%
2)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2]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제4조의2 관련)

연번	시·도	학교군	걸친 진료권	학교군에 해당하는 지역
1	충청북도	충북혁신도시 후기고등학교군	충청북도 청주권(진천군) 충청북도 충주권(음성군)	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